

[별표 1]

포엑스무역관 임대료 및 관리비

[단위 : 원, 부가세

별도]

구분	기간	㎡/원	3㎡~5㎡	6㎡~8㎡	9㎡이상
VIP-ZONE 전시구역 (1층중앙)	1개월	1,000,000	대기업, 중견기업, 벤처기업 (전기자동차, 로봇, 드론, 첨단의료장비, 기타)		
	3개월	800,000			
	6개월	600,000			
A-ZONE 전시구역 (CENTER)	1개월	800,000	560,000	480,000	400,000
	3개월	600,000	420,000	360,000	300,000
	6개월	400,000	280,000	240,000	200,000
				30%인하	40%인하
B-ZONE 전시구역 (SIDE)	1개월	600,000	420,000	360,000	300,000
	3개월	500,000	350,000	300,000	250,000
	6개월	400,000	280,000	240,000	200,000
				30%인하	40%인하

[별표 2]

포엑스무역관 임대 신청/승인서

행사명					
임대일자	임대시간	임대장소	참석인원	행사내용	비고
	~				
	~				
	~				
추가사항					

임차인(상호명)		사업자등록번호	
대표자		담당자(직위)	
업태		업종	
주소(우편번호)		휴대폰 번호	
전화번호		FAX 번호	

납부일정	계약 체결시	전체임대료	₩	비고
	임대개시 일전	장소 임대료	₩	
	임대개시 일전	추가 사용료	₩	
	임대개시 일전	부가세	₩	
	총 사용료(부가세 포함)			
납부방법	<input type="checkbox"/> 현금 <input type="checkbox"/> 카드 <input type="checkbox"/> 온라인 입금		납부처	

임대인	임차인
<p>포엑스무역관 운영규정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행사장 사용을 승인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 년 월 일</p> <p>포엑스무역관협동조합 이사장 (인)</p>	<p>포엑스무역관 운영규정의 이행을 약속하며 행사장 임대를 신청 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 년 월 일</p> <p>상호명 : _____</p> <p>대표자 : _____ (인)</p>

※ 신청서 접수처 : 포엑스무역관 TEL 063)400-0000 / FAX 063)400-0000

▶ 제출서류 : 사업계획서, 사업자등록증 등

[별지 1]

전시관 전용란	
담 당	부서장

포엑스무역관 임대차 계약서

임대인(갑) : 포엑스무역관협동조합 포엑스무역관
전북 군산시 새만금북로 437(오식도동)

임차인(을) :

상기 당사자간에 장래 포엑스무역관 임대차계약(이하 “계약”이라 함)을 체결하기로 합의하고, 상호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엑스무역관 임대차 예약(이하 “예약”이라 함)을 체결한다.

제1조(임대차 목적물)

포엑스무역관

옥 내 : _____ m²

옥 외 : _____ m² 계 : _____ m²

제2조(전시관 사용목적)

“을”은 목적물을 _____ 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차한다.

제3조(임대차기간)

이 예약에 의한 임대차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

(일)로 한다.

제4조(임대료)

기본 임대료 총액은 금 _____ 원정(부가가치세 별도)으로 한다.

단, 상기 임대료는 20 년 월 일 현재 전시관 임대요율에 의한 것으로서 “갑”의 사정

에 의하여 그 요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으로 한다.

제5조(예약금)

- ① “을”은 이 예약체결시 예약금으로 임대료 총액의 10%에 해당하는 금 ____원정(부가가치세 별도)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.
- ② 이 예약금은 계약체결시 납입하는 임대료의 일부로 대체된다.
- ③ 제1항의 예약금은 무이자로 한다.

제6조(계약체결기한)

“을”은 임대차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이 예약에 의한 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제7조(예약해지)

- ① 이 예약은 “을”이 제6조의 기한내에 본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.
- ② “을”이 제6조의 기한내에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이 예약은 해지되면 “갑”은 예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.
- ③ “을”이 이 예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“갑”은 예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.

제8조(운영규정준수)

“을”은 “갑”의 포엑스무역관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9조(용어해석)

이 예약서 내용중 용어해석상 쌍방간 이의가 있을 경우 “갑”의 해석에 따른다.

상기의 예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예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후 쌍방이 각 1통씩 각각 보관한다.

20

임대인(갑) : 포엑스무역관협동조합 포엑스무역관

전북 군산시 새만금북로 437(오식도동)

이사장 (인)

임차인(을) :

[별지 2]

전시관 전용란	
담당	부서장

포엑스무역관 임대차 계약서

임대인(갑) : 포엑스무역관협동조합 포엑스무역관

전북 군산시 새만금북로 437(오식도동)

임차인(을) :

상기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포엑스무역관 임대차계약(이하 "계약"이라 함)을 체결한다.
단, 기본 임대료가 변경될 경우 본 계약서는 변경된 임대료를 적용한다.

제1조(임대차 목적물)

포엑스무역관

옥 내 : _____ m²

옥 외 : _____ m² 계 _____ m²

제2조(전시관 사용목적)

“을”은 제1조의 목적물을 _____ 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.

제3조(임대차기간)

임대차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(일)로 한다.

제4조(임대료)

기본 임대료 총액은 금 _____ 원정(부가가치세 별도)으로 한다.

제5조(임대료 납부)

① “을”은 이 계약체결시 임대료의 20%에 해당하는 금 _____ 원정을 납부하
고, 임대료의 30%에 해당하는 금 _____ 원정을 20 년 월 일(임대
개시일 90일전)까지, 임대료의 50%에 해당하는 금 _____ 원정을 20 년 월
일(임대개시일 7일전)까지, “갑”에게 현금으로 납입한다.

② 기 납입된 예약금이 있을 경우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납입하는 임대료의 일부로 대체하고

부족된 10%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납입한다.

③ “을”이 동조 제1항에 명시된 기한내에 임대료를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“갑”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④ “을”이 임대차 계약서에 정한 임대료를 소정기일까지 납부치 못할 경우 소정금액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지체상금을 공사 주거래은행의 여신에 관한 연체이자율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

⑤ 동조 제1항의 임대료는 무이자로 한다.

⑥ “을”은 임대차기간 만료일까지 반입물품의 철거를 완료하여야 한다. 임대차기간내 철거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“갑”은 선 철거, 이전 조치 후 그 소요비용을 “을”에게 청구할 수 있다.

제6조(사용시간)

① 1일 전시관 사용시간은 포엑스무역관 운영규정(이하 “운영규정”이라 함) 제9조제1항을 적용한다.

② 단, 제9조제1항에서 정한 사용시간 이외의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사용자는 포엑스무역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.

제7조(원상복구비예치금)

① “을”은 “갑”의 운영규정 제21조, 제46조에 의한 원상복구비 금 _____ 원정(부가가치세 별도)을 20 년 월 일(임대개시일 7일전)까지 “갑”에게 현금 또는 증권으로 예치하여야 한다.

② “갑”은 전시관 사용종료시 제1항의 예치금을 원상복구비로 대체 정산하며 정산후 발생된 잔금은 정산종료와 동시에 “을”에게 환불한다.

③ 제1항의 예치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예치기간 중 무이자로 한다.

제8조(운영규정의 준수)

① 계약기간중 “을”은 “갑”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“을”이 제1항을 위배하여 “갑”에 손해를 입힌 때에는 위 운영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.

③ “을”은 “_____” 행사와 관련하여 해당관청에 인·허가 및 신고, 승인 등에 대한 제반업무를 일괄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하며, 이를 위반하거나 미조치 등으로 인해 행사 취소 등을 포함한 “갑”에게 발생하는 모든 민원, 규제, 과태료, 벌금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.

④ 본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“을”은 각종 민원 등의 빌미를 제공하는 내용을 운영하지 않으며, 민원이 발생할 경우 “을”을 책임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하며,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세부 운영은 “갑”의 통제에 따른다.

⑤ “을”은 임대차기간동안에는 민원 및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야 하며, 임대차기간내 안전관리를 위하여 충분한 안전요원 및 운영요원을 배치하고 고객의 안전보장 및 상해 배상을 목적으로 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권 사본을 “갑”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임대차기간내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“을”에게 있으며, “갑”에게 아무런 이익을 제기하지 않는다.

제9조(전시관 일부 사용취소 및 위약금)

① 이 계약 체결후 “을”이 계약된 전시관의 50%미만에 대한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에 정하는 위약금 상당액을 “갑”에게 지불하여야 한다. 단, 기 납입된 임대료가 있을 시 위약금을 차감한다.

취소시기	위약금
임대개시일 전일부터 7일까지	취소 임대료의 70%
임대개시일 8일 전부터 90일까지	취소 임대료의 50%
임대개시일 91일 전까지	취소 임대료의 20%

② “을”은 위약금 납입즉시 “갑”과 재계약을 체결하며, 이에 따른 임대료, 원상복구예치금의 납입 및 기타 사항은 “갑”의 운영규정에 준하여 실시한다.

③ 임대차 계약체결 후 전시관 사용기간은 변경하지 못한다. 단, 임대료의 10%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납입하고 포엑스무역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, 이는 계약 당해년도 한한다.

제10조(해약)

① 이 계약체결후 “을”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“갑”은 일방적으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면, “을”은 다음에 정하는 해약금 상당액을 “갑”에게 지불하여야 한다. 단, 기 납입된 임대료가 있을시 해약금을 차감한다.

가. “을”이 제3자에게 이 계약상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

나. “을”이 계약된 전시관의 50%이상에 대한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

다. “을”이 제5조 및 제7조에 명시된 기한내에 임대료, 원상복구 예치금을 납입하지 못

사용자의 해지의사 표시시기	위 약 금
임대개시일 전일부터 7일까지	취소 임대료의 70%
임대개시일 8일 전부터 90일까지	취소 임대료의 50%
임대개시일 91일 전까지	취소 임대료의 20%

하는 경우

② 제1항의 해약금은 기 납입된 임대료를 초과하지 않는다.

③ 계약해지 시기는 “을”이 동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시점으로 한다.

제11조(용어해석)

① 이 계약서 내용중 용어해석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“갑”의 해석에 따른다.

② 이 계약체결시 시행중인 “갑”의 운영규정은 이 계약의 일부로 본다. 단, 상호 상치되는 경우는 본 계약조항이 우선한다.

상기의 계약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쌍방이 서명날인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20

임대인(갑) : 포엑스무역관협동조합 포엑스무역관

전북 군산시 새만금북로 437(오식도동)

이사장 (인)

임차인(을) :

▶ 제출서류 : 사업계획서, 사업자등록증 등